

이번 호에는 87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당 협회 본·지부에서 개최됐던 특수건물 소유주 초청 간담회에서의 주요 질문사항 및 답변내용을 간추려 실는다. <편집자 주>

● 방재상담

문: 건물의 설비가 계절이 바뀔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지금까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연 2회로 늘려 실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답: 전체업무를 조정하기에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 등의 여건으로 보아 어려운 요청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소유주께서 필요시 요청하시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질의자: 신동아아파트, 응답자: 점검 1부>

문: 소방장비의 개발을 위해 소화기기 제조업체에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답: 저희 협회에서는 특수건물에 대하여 소화설비 개량자금과 소화기기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를 두고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주)성화, 응답자: 점검 1부>

문: 귀 협회의 안전점검 결과 면적별 방화구획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입장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른 대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방화구획은 용도상 구획이 불가능한 부분 즉, 객석부분은 제외한 기타의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객석부분과 이를 제외한 부분 사이를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자: 아카데미극장, 응답자: 부산지부>

문: 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설비의 공사단계에서부터 협회가 참여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 건물의 신축시나 설비 설치시에 행정적으로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시부터 도면검토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나라도 저희 협회를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서문시장, 응답자: 대구지부>

문: 현재 새로 구입, 설치한 소방기기가 불량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오동작이 빈번히 발생되는바 원인 및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답: 건물소유주 및 점유자나 출입자들의 사용미숙 또는 부주의, 호기심 등으로 인한 오동작의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기기 자체가 과거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어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에서는 소화시설 성능시험등을 통하여 개선할 점은 내무부, 소방기기검정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정·건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삼부 아파트, 응답자: 인천지부>

문: 각종 소화설비 할인혜택은 매년 보험계약 갱신시마다 자동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답: 시설물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화설비등은 경년에 따라 설비가 노후되기도 하고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성능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매년 안전점검시 이들 시설에 대한 성능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의자: 전주 백화점, 응답자: 전주지부>

문: 귀 협회의 점검결과가 관계관서에 통보되면 즉시 행정명령으로 발부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수하자면 비용이 드는데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던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비용 염출은 회사 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검 결과는 점검 당해년도에 통보만 해주고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결과는 관계법규의 개정, 건물 용도등의 변동이 없는한 대체적으로 매년 통보되는 사항임으로 갑자기 방재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계기관과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반영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받을 수는 있겠으나 시설미비로 인한 그간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당 협회

에서는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연 8%의 이율로써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소화설비 개량자금에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 드리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교원공제회, 응답자: 부산지부>

● 보험상담

☞: 저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7대도시에 있는 공장은 화협에 가입하고 그외는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어 업무가 2원화되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 현행 법상으로는 7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어 신흥공단 및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지금으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질의자: 해태제과, 응답자: 전주지부>

☞: 지난해 태풍에 변압기가 고장났는데 당 업소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귀 협회의 고장확인 절차를 기다릴 수 없어 미리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 보험계약시 변압기가 별도의 설비로서 부보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되며 이미 보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고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만 제시된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자: 아카데미극장, 응답자: 부산지부>

☞: 당사는 11월26일이 보험계약만기일으로써 만기일 이전에 국가예산 재신청을 하여야하나 12월말경에나 타예산에서 전용, 배정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국가기관 및 관공서는 예산영달 및 결제에 문제가 있을시 1개월의 보험료 유예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 이는 일반인의 보험료 납입과는 별개로 취급되어 1개월의 유예기간내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자: 부평경찰서, 응답자: 인천지부>

☞: 당 공장에서 올해 불행하게도 두번의 화재와 세번의 풍수재를 겪었으나 귀 협회의 신속하고 친절한 일처리로 원만하게 수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상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지 체출서류가 복잡한 느낌이 있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화재나 풍수재시 손해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손해에 대하여는 지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5백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있어서는 저희 협회 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정회사의 정밀조사등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라도 추정손해액이 산출된다면 그 50% 범위내에서 가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서류는 보험금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이며 절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가장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자: (주)풍영, 응답자: 부산지부>

☞: 저희는 환자와 문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병원입니다. 만일 화재시 환자나 기타 외부인에게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보상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화보법의 취지가 건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특히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에 주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시 환자나 외래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인원수에 제한없이 사망인 경우 1인당 5백만원, 부상인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4백만원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토록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에 특히 알아두실 것은 타인만이 해당됩니다. 소유자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대우병원, 응답자: 대전지부>

☞: 이곳은 다행히도 풍수재 피해가 없었으나 서울 경기, 부산 등은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겠으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특수건물하니까 화재에 대한 보상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특수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는 신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풍수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풍수재로 8백 46건에 1백억원 이상의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질의자: 한미쇼핑>